#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22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이재관·김종민·박지원

박희승 • 박수현 • 이언주

문진석 • 이광희 • 이병진

정진욱 · 송재봉 의원

(11인)

###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보상,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폐 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 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 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기한 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법률 제 호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따른 발전사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 군·구를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폐지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하

- "폐지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을 통하여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이하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4.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갈등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지역 활성화위 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종합지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되,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폐지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 2. 폐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 4. 폐지지역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5. 폐지지역의 국토 및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6. 폐지지역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폐지지역의 도로・항만・공항・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정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환경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되, 폐지지역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 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하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하되, 필요한 자금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 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지원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특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이하"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지역의 산업ㆍ경제에 낙후 또는 쇠퇴가 발생한 경우
  - 2. 지역의 사회 · 경제지표의 현저한 감소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
  - 3. 지역의 지방재정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폐지지역의 주민·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협의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특구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특구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한 특구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각 호의 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산업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제14조(고용안정지원 등) ①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 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시설 등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공항·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폐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학교·병원 및 관광·숙박 ·체육 및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①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또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폐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업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폐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또는 폐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

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40년 12월 31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